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I.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참고 사례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인권보도준칙 1차 개정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인권 현안 등을 중심으로 편집되었습니다.
2. 이 책자는 인권보도준칙과 여러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기준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기자협회의 공식 견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3. 이 책자에 실린 언론보도 사례는 미디어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수집자료와 언론보도 관련 심의자료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집 최종 검토 과정에서 현장 기자, 언론 분야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이 책자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언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언론이나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뜻이 없습니다.



참고 사례집, 이렇게 활용해주세요.

1.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주제별, 영역별 기사자료를 소개하고 인권 친화적인 보도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언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2. 2부에서는 현장 언론인들이 인권보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준칙, 기준, 요강 등을 수록했습니다. 현장 언론인들의 기사가 관련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능한 최신 자료를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3. 언론단체와 일부 인권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계층 등에 대한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 및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앞으로도 언론인들이 다양한 인권 현안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외부 기관 및 전문가의 견해 등은 ○, 권장할 만한 좋은 보도는 😊, 지양해야 할 보도는 😞 로 표기하였습니다. 언론사와 기자 이름, 기사에 등장하는 실명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취재 과정 및 보도 이후 유의사항



인권보도는 의도와 결과뿐만 아니라 취재 과정과 사후 대응도 중요합니다. 인권 보도의 취재 대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일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인권보도 실천 매뉴얼 등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현장 언론인들이 인권보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취재 및 인터뷰이 섭외 시 유의사항

가. 일반적 유의사항

- ① 취재에 앞서 취재 동기, 경위, 소요 시간, 취재 및 보도의 의도와 목적, 보도 방식 등을 분명하게 밝힌 뒤 동의를 구해주세요.
- ② 섭외 시 소속 언론사와 신분을 알리고, 소속 기관에서의 역할도 설명해주세요.
- ③ 언론인이 아닌 척하고 접근하는 모습은 지양해주세요.
- ④ 인터뷰를 원치 않을 때는 되도록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 ⑤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을 통한 취재는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 ⑥ 대중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취재원 또는 인터뷰이에게는 인터뷰 내용과 사진이 어떻게 사용될지 설명해주길 권합니다.



- ⑦ 이주민·난민, 노인,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동의를 구할 때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주세요.

나. 인터뷰 대상자별 유의사항

- ① 재난 피해자 섭외 시 피해자가 속한 기관 등의 대표자와 먼저 소통한 뒤, 피해자와 개별 접촉을 해주세요. 해당 인터뷰가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② 감염인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하거나, 보도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주세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취재할 때는 감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주세요.
- ③ 장애인 취재 시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관련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주민·난민을 취재 대상으로 고려할 때,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정만으로 취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점검해주세요.
- ⑤ 아동·청소년 인터뷰 시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취재 보도의 동의 과정에서 미숙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⑥ 북한이탈주민 섭외 시, 신뢰할 만한 지원단체의 협조를 구하도록 권장합니다.

2. 취재 및 인터뷰 시 유의사항

가. 일반적 유의사항

- ① 인터뷰이와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주세요.
- ② 인터뷰이 발언의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③ 최종 보도를 송고하기 이전에 해당 인터뷰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길 권장합니다.

나. 인터뷰 대상자별 유의사항

- ① 재난 피해자 인터뷰 시 피해자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인터뷰 시간이나 공간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지 살펴주세요. 재난 피해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② 재난 목격자 인터뷰 시 취재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꼼꼼하게 검증해주세요. 취재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취재원이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지 점검해주세요.
- ③ 장애인 인터뷰 시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에 적합한 질문 방식과 촬영 방식을 검토해주세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언 기회 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장애인에게 취재 시작 및 소요 시간을 미리 알려 귀가 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 ④ 난민 촬영 시 인터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을 자제해주세요 비공개를 전제로 동의를 받은 경우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주민·난민 인터뷰 시 통역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해주세요.



- ⑤ 아동·청소년 인터뷰 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의견을 왜곡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선택하여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⑥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합니다.
- ⑦ 성소수자 인터뷰 시 관련 기사가 결과적으로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주세요.

3. 기사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주세요. 성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신원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직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나. 전문가나 취재원이 언급했더라도 불확실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다. 당사자 동의가 있는 취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4. 보도 이후 유의사항

- 가. 취재원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요구하지 말고, 수집된 정보는 보도 직후 폐기해주세요.
- 나.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 다. 보도 이후 신변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 라. 보도 이후 차별, 혐오,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언론사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목 차



I.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1. 재난 보도와 인권	13
2. 감염병 보도와 인권	23
3. 자살 보도와 인권	28
4.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34
5. 성평등 보도와 인권	54
6. 장애 보도와 인권	63
7. 정신질환 보도와 인권	75
8. 이주민·난민 보도와 인권	79
9. 노인 보도와 인권	89
10. 아동·청소년 보도와 인권	97
11. 성소수자 보도와 인권	105
12.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와 인권	110
13. 언론 보도 속 인격권	114

I.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1. 재난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재난 보도가 준수해야 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보도준칙>(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4.9.17.개정),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11. 공동 제정) 등을 참고해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위의 규정 중 재난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재난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재난 생존자, 희생자, 유가족 등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2022년 11월 1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고,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정적 보도와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월 1일 보도자료에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음. 이전 참사와 비교할 때 방송사들이 뉴스 속보의 문제점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점은 중요한 성과임. 이처럼 언론 현업 단체들이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음.



- 사상자 명단 등을 공개할 때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 2022년 10·29참사 이후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발표회(2022.11.7.)에서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위원장은 “기존 언론은 재난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마치 해부하듯이 집요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인들이 인터뷰를 청할 때에는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재난 무력감이 큰 2030세대는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였다고 말했다. 또한 “비난·혐오가 트라우마를 악화시킨다”, “공감·위로는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참사를 애도하고 그와 더불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함.

☹ 2017년 포항 지진 당시(2017.11.16.~17.) 여러 방송사가 대피소에서 쉬는 다수의 이재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됨. 대피소에서 잠을 자고, 식사하고, 누워 쉬는 이재민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송한 경우, 흐리게 처리했지만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어린이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 경우, 대피소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재민의 얼굴을 노출한 경우 등이 있음.¹⁾

1) 비슷한 사례의 보도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제목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이하 동일)

2) 특정한 언론사의 보도 사례일 경우, 제목과 일자를 <제목>(보도년월일)로 표기했고, 보도 내용은 필요한 경우 “ ”로 인용 표기했습니다.(이하 동일)

⊘ 2018년 핑크돌핀호 좌초 당시,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2018.3.25.)²⁾에서 재난 생존자의 귀환 장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 얼굴을 공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미성년자는 개별 취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미성년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한 방송사에서 가족 중 혼자 구조된 6세 어린이를 근접 촬영하고 인터뷰를 시도함.(2014.4.16.)

- 재난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과잉 취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한 언론사가 <세월호 보험, 학생들은 ○○화재 보험, 여객선은 ○○○ 선박보험 가입>(2014.4.16.)이라고 보도함. 이후 다른 언론사도 세월호와 단원고의 보험 가입 여부를 다루는 보도를 게재함. 같은 날 한 방송사는 심야 뉴스에서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 따져보는 리포트를 함.


⊘ <안산 단원고 숨진 고교생> (2014.4.16)은 사망한 학생의 책과 공책을 책상 위에 놓고 촬영하여 보도함



- 피해자와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가족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위원장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발표회(2022.11.3.)에서 10·29 참사 관련 취재 기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함. 해당 메시지에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화드렸던 ○○뉴스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태원 현장에 계셨던 분을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중략) 혹시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건드리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될까 봐 질문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였음. 정 위원장은 재난이 벌어졌을 때, 언론인도 전문가와 논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 2022년 10·29 참사 당시, <혐오발전소, 댓글 창>(2022. 11.2.9.)은 “10.29~11.9까지 이태원 참사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123만여 개 가운데 58.27%가 혐오 표현을 담고 있었다.”라고 보도함. 기사는 “댓글 속 혐오 종류를 보면 악플·욕설(51.12%) 비중이 가장 높았다. ‘희생자 조소’, ‘외국인 혐오’, ‘정부 지원금 반대’, ‘추모 지겨움 표현’ 등도 댓글에 드러나 있었다”라며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이 지면에 ‘댓글 담수성 자가 테스트’ 항목을 전면 배치하고 혐오 댓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클린 댓글 캠페인’을 펼침. 혐오 표현과 댓글의 문제를 지적함. 2023년 1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

- 
 2022년 10·29 참사 당일, 방송사 뉴스특보에서 인터뷰 중이던 ‘현장 목격자’가 “내 친구를 직접 1시간 30분 동안 CPR 했다.”라고 말함. 인터뷰를 진행하던 현장 기자는 목격자가 희생자의 지인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친구분은 혹시 사망하신 건가요?”라고 되물음. 해당 언론사는 이후 방송내용을 삭제함.

나. 정확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재난 보도에서는 신속함보다 정확함이 더 중요합니다. 교차 검증을 거친 뒤 보도해주세요. 보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빠르게 정정해주세요.

-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많은 언론이 ‘전원 구조’ 오보를 냈음 (2014.4.16.). 오보 방송사는 총 8개 사로, 재난주관 방송사,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 등이 포함됨. 이 오보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 
 2016년 5월 18일 오후 5시 20분 경, “19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군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70여 건 보도되었음. 기상청 직원이 실수로 보낸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관련 팩스를 각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생긴 오보였음.



- 참사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의견이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참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황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보도해주세요.

☹️ 10·29 참사 직후 많은 매체가 목격담, SNS상의 소문을 토대로 참사 원인이 ‘뒤에서 민 사람들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토끼 머리띠 한 남성’을 특정함.(2022.10.29.)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으며 당국의 부실 대응 및 안전 조치 미비 등 참사의 근본 원인과는 전혀 무관한 ‘소문’이었음. 그러나 <이태원 압사 비극, 어떻게 시작됐나…“밀어” 구호 나왔다>(2022.10.30.), <참사현장 곳곳 ‘밀치는 장면’ 포착… 경찰, CCTV 확인 등 수사 돌입>(2022.10.30.) <고의로 민 사람 있었을까… 경찰, 이태원 일대 CCTV 확보 분석>(2022.10.30.) 등 다수 언론에서 ‘뒤에서 민 사람들에 초점을 맞춤.

☹️ 2022년 10·29 참사 당시, 방송사 뉴스특보(2022.10.29.)에서 기자가 “목격자들은 유명인이 방문하면서 해당 주점을 찾아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새벽 2시 현장 제보자 인터뷰에서 “저희가 처음에 전달해 드리기로는 한 주점에 유명인이 와서 그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함. 이후 다수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명인’이 누구인지 지목되고 지목된 유명인들은 이를 반박함.

다.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흥미 위주의 보도가 아닌지 심사숙고해주세요.

😊 2022년 10·29 참사 사흘째인 10월 31일, 주요 방송사들은 저녁 종합 뉴스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담은 영상 사용을 자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힘. 방송사들은 자극적 화면은 사용하지 않고, 특히 사상자가 노출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영상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 사고의 직접적 원인 등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음을 지우고 정지화면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힘. 비록 늦었지만, 뉴스 속보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임.

☹️ 2022년 10·29 참사 당시 다수 매체가 사고 전후 장면이 담긴 SNS 영상, 제보 영상을 노출함.(2022.10.29.) 영상 속에는 희생자에게 CPR을 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시신의 모습도 있었음. 이처럼 충격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들이 여과 없이 방송됨. <악몽된 이태원 ‘הללוין 주말 밤’…비명·울음 뒤엉켜 ‘아비규환’>, <현장 사상자 100명 이상… 이태원 도로 곳곳 수십구 주검 놓여> 등은 모자이크 처리 없는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가 뒤늦게 사진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함.

-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사고의 기사·영상·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 자료 화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참사 당시, <침몰 유람선 사진 공개…수중 상황은?>(2019.6.1.)에서 다뉴브강과 세월호 참사 당시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유속을 비교했음. 특히 이때 화면에 맹골수도의 세월호 침몰 장면과 다뉴브강의 유람선을 함께 비교해서 보여줌. 이는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컴퓨터그래픽스(CG)는 시청자에게 사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사용해주세요.

☹️ 한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묵 시식 방송 장면을 방송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뉴스' 당시 뉴스 속보 장면을 배경으로 사용함. 침몰하는 세월호가 나오는 부분을 흐리게 처리한 화면이었음. (2018.5.5.)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어묵을 언급한 혐오 표현이 있었는데, 어묵이 나오는 장면에서 세월호 영상을 사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였음. 해당 방송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화면 삽입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발표함. 그러나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방송심의 규정의 명예훼손, 윤리, 품격 유지 항목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최고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

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편견, 혐오 표현이 등장합니다. 재난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 특정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022년 10·29 참사 당시, 일부 매체가 외신을 오역한 채 인용하여 마치 참사의 원인이 ‘헬러윈을 변질시킨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함. <WSJ “아이들이 사탕 얻는 헬러윈, 한국선 클럽 가는 날 됐다”>(2022.10.30.)에서 “한국 내 헬러윈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벌어진 참사를 자세히 전한 뒤 “한국에서 헬러윈은 아이들이 사탕을 얻으러 가는 날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20대를 중심으로 코스튬을 차려입고 클럽에 가는 행사로 정착됐다”라고 전했다.”라고 보도함. 이처럼 한국 헬러윈 문화를 2줄 정도로 언급한 것일뿐, ‘변질됐다’거나 한국 문화를 ‘꼬집은’ 표현은 없었음에도 여러 언론이 ‘한국에서 헬러윈이 변질했다’라며 해당 외신을 인용 보도함.

- 언론은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 재난 이후 멈춰버린 시간> (2021.6.25.)에서는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자들의 재난 이후 삶을 취재하여 그들이 겪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과 재난 트라우마를 조망했음. 이처럼 재난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삶을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바람직함.



😊 2022년 10·29 참사 당시, <“이 와중에” 하루에 무려 30만 개 달린 이태원 ‘댓글’, 왜 이러나>(2022.10.30.)는 “참사 다음 날 뉴스 댓글 수는 3배 이상 폭증했다. 작성자의 약 40%가 40·50대 남성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댓글도 많지만, 특정 세대를 비난하는 듯한 2차 가해성 댓글도 상당수였다”라고 보도함. 이처럼 무분별한 댓글과 혐오 표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빠르게 사안을 취재해서 대책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였음.



2. 감염병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준수해야 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2020.4.28. 공동 제정)을 참고해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위의 규정 중 감염병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감염병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주세요.

-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주세요.

😊 <팩트체크K/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팩트체크 연속 보도>(2021.8.12.~11.15)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명적 허위 정보를 치밀한 취재로 적시에 보도해 생명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했고 특히 독자적으로 원문 정보를 발굴했음. 이 보도는. 2022년 3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가 공동제정한 '한국팩트체크대상'에 선정됨.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일련의 팩트체크 기사>(2021.3.3.~10.7.)와 <팩트맨/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 팩트체크 연속 보도>(2021.2.2.~6.7.) 등도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가 돋보여서 우수상을 받음.



☺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코로나 19 최전선의 기록>(2020. 4.11.)는 2020년 3월 한 달간 경북대병원 의료진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진이 위험을 감수했음. 코로나19 의료체제와 치료 과정 등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전선 의료진의 노고를 그대로 살린 보도는 사실 전달 이상의 의미를 줌. 이 보도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함.

-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美CDC(질병통제예방센터) “원숭이두창 동성간 성접촉으로 확산”>(2022.5.24.)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 성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게 유력한 가설”이라 보도함.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확산 초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브리핑 중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환자들은 자신을 게이 또는 양성애자 남성이라 밝혔다”라는 대목이 있었을 뿐인데, 이를 ‘동성 간 성접촉 확산’으로 보도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 경로를 사실처럼 인식하게 함.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해당 브리핑에는 동성간 성접촉을 확산 경로로 특정한 내용이 없었으며 오히려 “체액, 염증 또는 호흡기 비말 접촉으로 원숭이두창을 퍼뜨릴 수 있다.”라며 언론과 당국에 ‘낙인에 유의하라’는 당부까지 하였으나 다수 국내 언론이 이를 생략함.

- 감염병 발생은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해주세요.

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패닉, 대혼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 메르스 감염병 당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2015.5.20.)과 유사한 제목으로 메르스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여 보도함.

다. 감염인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주세요.
- 감염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주세요.

라.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주장이 등장할 때, 인권 측면에서 면밀히 살피고 보도해주세요.

- 감염병이 생기면, 그 원인을 다른 집단에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2020년 5월 이태원의 한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2020.5.7.)에서 해당 업소가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함. 이외에도 다수 언론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연령, 주거지, 직장 등 특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드러내 사생활을 침해했음. ‘게이클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한편, 2022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였던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 과정에서 기사 제목에도 ‘블랙수면방’, ‘게이전용 시설’, ‘찜질방’ 등 방역 목적과 무관하게 성 소수자 집단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해 소수자 집단을 향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되도록 했음.

- 용어 사용에 신중해주시고 감염병 명명 원칙을 지켜주세요.

○ 2015년 WHO에서는 새로운 병명과 병의 원인체에 대한 명명 원칙을 새로 수립함. WHO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병의 명명은 특정 질병의 이름이 특정 종교, 민족 공동체의 반발을 일으키고, 여행, 산업 및 무역에 대한 장벽과 식용 동물의 불필요한 도살을 유도해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고했음. 따라서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또는 음식의 종, 문화, 인구, 산업 또는 직업 등을 질병 이름에서 피해야 할 용어라고 언급했고, 과도한 공포를 유도하는 단어도 배제하기로 했음. 코로나19 발병 초기 대다수 언론이 ‘우한폐렴’으로 명명했으나, 2020년 1월 27일 감염증의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밝히고,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한글 표현을 ‘코로나19’로 명명했음. 이는 WHO의 2015년 개정된 새로운 인간 감염성 질환 명명법에 따른 것임.

- 특정 국가나 민족, 지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코로나19 감염병 당시 <단독 ‘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 우한폐렴 들끓는데...>(2020.1.30.)에서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천억 원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중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상황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 관광 방문뿐 아니라 치료 목적 방문이기에 방역·검역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함. 이는 재중 교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 사례임.

☹️ <“대구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지역혐오>(2020. 5.1.)는 지역혐오 현상을 짚어주는 보도였음. 그러나 온라인상의 지역혐오 발언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주었고 그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취재 의도와는 달리 지역혐오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었음.



3. 자살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는 자살 보도 시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살 보도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18.7.31. 공동개정)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살사건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자살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자살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표현을 참고해주세요.

기존 표현	대안 표현	권고 사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다, 극단적 선택	사망하다 숨졌다.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함.
목매 숨져, 목매사, 투신 사망,		자살 방식이나 도구 등을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
동반자살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동반자살을 사용하지 않기 권함.
연이은 자살, 또 자살, 자살 전염		자살이 유행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를 권함.

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거나, 자살 도구·장소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공부 감시 부친 보는 앞에서... 28층서 투신한 명문고생>(2022.4.4.)에서 고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유서 내용도 상세히 담았음. 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경고' 조치

☹ <'○○ 일가족 실종 사건' ○○ 부모 '루나 코인' 검색>(2022.6.29.), <○○ 부모, 1억대 금융 채무...포털서 '추락' '물때'도>(2022.6.30.) 등 다수 보도에서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자살자 발언과 자살 경위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살 보도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

다.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다룬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라.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 ○○○ 전 회장 “결백 밝히기 위해 자살하겠다” 자원외교 비리는 무엇?>(2015.4.9.), <○○○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수치와 명예’>(2018.8.7.), <영화 리뷰 ‘노리개’ 자살 여배우의 절규, 사회 부조리 고발하다>(2013.4.15.) 등의 제목은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음.



마.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발생합니다. 자살 동기를 예단하여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2022년 ○○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보도에서 <○○○ 아빠, 가상화폐 투자로 2000만 원 손해봤다>(2022.7.1), <‘코인 투자’가 비극 불렀나… 결국 돌아오지 못한 ○○○양>(2022.7.1) 등의 보도에서 고인이 ‘루나 코인’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자살 동기로 단정하는 보도가 다수 있었음.

바. 목격자 인터뷰나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 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여 수색 끝에 발견한 상황에서 여러 방송사를 통해 ‘경찰 브리핑’이 생중계(2017.7.10.)되었는데, 당시 기자들이 “사안을 좀 더 조사하셔야 하겠지만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휴대폰 하고 소지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소지품 말고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등의 질문을 함. 경찰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면서 사망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음.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생중계 방송에서 일부 언론인이 이처럼 질문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2) 고인과 유가족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가. 고인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 ○○ 일가족이 실종된 당시 <극단적 선택 의심 정황 ‘속속’...의혹 속 진실은>(2022.6.28.) 등의 보도에서 “○○의 부모는 수개월 전 컴퓨터 관련 사업체를 폐업한 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나 운영 중인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집에 수천만 원의 카드빚 독촉을 안내하는 법원 특별우편 송달 딱지가 붙어 있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의 어머니도 최근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함. 아직 사건의 경위가 정확히 ‘극단적 선택’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종자들의 직업과 경제 상황까지 모두 노출한 사례임. 개인정보는 사건의 진상과 결정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를 자제해야 함.

나. 유서와 관련한 사항의 보도는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주세요.

☹️ 개그맨 ○○○ 사망 당시,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고인의 병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어머니 유서 내용을 공개함.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보도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 보도와 인권존중-자살 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



다. 유가족의 심리 상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보도해주세요.

☺ <“나는 자살생존자입니다”>(2020.11.21.), <“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극단 선택 후 남겨진 그들 이야기[밀실]>(2021.9.8.) 등은 자살 생존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 자살생존자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살자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음. 이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도는 결과적으로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임.

☹ 정치인 ○○○ 사망 당시 <충격에 빠진 ○○○ 투신 아파트 주민들...“심폐소생술 3-4분 하다 천 덮어”>(2018.7.23.)에서 “인공호흡을 3-4분 시도하다 소생 기미가 안 보이니 무슨 비닐 같은 거로 덮고 나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쳤다”, “어떤 남자가 현관 앞에 얼굴을 땅 쪽으로 대고, 대자로 누워 있었다” 등 주민들의 목격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음.

라.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보도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필요하게 고인들이 살던 자택을 사진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자택 주소는 물론, 고인들의 ‘직업 유무’까지 거론했음. <자택 곳곳 세 모녀 ‘고통’ 흔적이…“규정 아닌 이웃 관심 절실”>(2022.8.23.)에서 “매캐한 썩은 내에 두 다리의 힘이 갑자기 풀렸다. 가까스로 낡은 적벽돌 연립주택의 1층에 들어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방과 거실 곳곳에는 비닐봉지와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상태였다” “세 모녀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 고인들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사진과 함께 ‘널브러진 상태’ ‘매캐한 냄새’ 등의 상세한 묘사는 적절치 않았음.

마. 사망을 둘러싼 유언비어를 정확한 근거 없이 보도하지 마세요.

- ⊗ <타살설로 시끌>(2018.7.28.)에서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이 ○○○ 의혹을 숨기려고 ○ 의원이 희생당했다며 타살설을 주장했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외쳤다”라고 보도함. 객관적 근거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이 정치적 의혹을 숨기기 위해 타살당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경고’ 조치



4.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범죄 보도가 준수해야 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보도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12.12. 공동 제정)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수첩>(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동제작)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범죄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사건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³⁾,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단정적 표현에 주의해주세요.

☹ <학폭 인정> ○○ SNS글에 “성폭행 당한 여자 남편이다” 댓글>(2021.3.5.)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배우 ○○와 관련해서 또 다른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온라인 댓글이 올라오자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댓글 내용을 기사화했음. 이후 댓글 작성자가 댓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해당 언론사는 기사 수정이나 삭제를 하지 않았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위반으로 경고 조치

3)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 <텍사스 한인 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2018.5.9)은 해외 거주 한인 부부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아내의 이름·얼굴·나이·직장·이력 등을 공개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조치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된 후에도...“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2018.3.27.)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했음. 사진은 모자이크로 처리했지만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조치

- ☹ <김○○ 성추행 추가 폭로, 가수 이○○?...아찔한 몸매?, 과감한 노출까지?>(2020.1.20.)는 연예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의 과거 인스타그램 사진을 공개했음.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 2020년 4월 13일 N번방 사건 당시, <단독!○○○ 폰엔, 여성 000 2명 ‘충성 사진’ 있었다>, <○○○ 폰엔 ‘특정 손가락 포즈’ 0000들 사진 있었다> 등에서 보도 제목과 내용에 SNS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피해자의 직업을 명시하고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해자 휴대전화 속 사진의 피해자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음.



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감방 동기가 본 '68세' ○○○ "1시간 푸시업 1000개에 자위 행위"... '성욕 과잉' 우려도>(2020.12.6.)는 ○○○의 출소가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성범죄자의 교도소 내 이상행동을 '자위행위'라는 구체적 표현까지 제목에 올리며 보도할 당위성은 없음. 이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및 제4항 선정보도의 금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


마.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대학교 총장인 피의자가 같은 대학 소속 교수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대학총장이 같은 학교 여교수와 '연인' 사이?>(2014.8.11.)는 "애인 사이"라거나 "연인 사이이기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도 같이 잤다"라는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 이에 법원에서 3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용됨.

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묘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배우 조○○ 카톡, 본인 성기 사진까지 보내? “그 긴 혀로 어찌해줘” 경악스러운 ‘성집착’>(2018.2.28.)에서 유명 배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함. 특히 특정 신체 부위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동성 성폭행 피해 미군들 “우린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2020.7.3.)에서 독일 주재 미군 부대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보도하면서 범행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함. 특히 지나치게 가혹한 성폭행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권○○, 112신고 “김○○ 향해 네 XX 곱게 갈아서 먹여주겠다” 잔인한 협박 때문에…>(2020.8.24.)는 유명 가수에 대한 안티팬들의 협박 사건을 보도함. 그러나 블로그에 올라온 협박 글을 캡처해서 상세히 게재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사. 범죄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고 표현해주세요.

☹️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에 딸 사진이…미국판 ○○○ 사건 다룬 넷플릭스>(2022.8.26.), <‘리벤지 포르노 vs 배신’,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도 되나?>(2022.8.3.), <○○○, ○○○과 갈등 폭발…“사기 결혼·포르노 리벤지 다 겪었다” (2022.8.2.) 등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을 다수 언론이 사용함.

- ‘몰래카메라’, ‘몰카’라는 표현은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불법 촬영’으로 해주세요.

☹️ <○○○ 몰카 본 ○○○ “단톡방 멤버는 아니었다, 잘못된 대화 반성”>(2022.11.10.)은 제목에서도 ‘몰카’라고 표현했고, 내용에서도 “가수 ○○○이 직접 촬영한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본 가운데”라고 보도했음. 해당 영상은 ‘여성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이며, 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하여 무의식 상태의 여성을 강간한 명백한 불법 촬영물임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몰카’라고 표현

-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나쁜 손’, ‘몹쓸 짓’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11년 동안 여학원생들에 나쁜손·몹쓸짓...50대 학원장 “합의했다”> (2022.6.15.)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10년 넘게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학원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나쁜손·몹쓸짓’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 해당 사건은 9세 아동의 신체를 반복해 만지다가 14세 이후 성폭행을 했으며, 이 피해자의 동생까지 14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임. 이와 같은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 나쁜 손 · 몹쓸 짓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음.

아. 되도록 사건 피해자를 주체로 한 사건명을 쓰지 말아주세요.

☹ <○○○·○○○ 사건 조사한 과거사위 다시 수면 위로>(2021.8.25.) <‘○○○ 사건에 놀란 가슴...’ 심야영업 적발 엔터사 연습실의 정체>(2021.4.2.) <○○○, ○○○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도>(2019.1.31.) <○○○ 장관, ○○○ 검사 성추행 사건에 언급되는 이유?...통영지청에 응원의 ‘METOO’ 카드 이어져>(2018.2.1.) 등 성범죄를 명명할 때 피해자 이름을 주체로 하는 경우가 많음.



자. 범죄 내용을 보도하면서 차별적 표현, 비하 표현, 선정적 표현에 유의해주세요.

☹ <“○○○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
(2021.1.29.)는 방송인 ○○ 씨에게 남편인 가수 ○○○ 씨의 장애를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애인 비하 표현인 ‘애자’를 사용하고, 2차 가해가 명백한 글을 그대로 기사에 사용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④항(선정보도의 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

2) 성폭력·성희롱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음을 유념해주세요.

😊 <기성세대 성문화가 교실서 일상화...“n번방” 이미 학교에 있었다> (2020.4.13.)은 ‘N번방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다각적으로 정리한 좋은 보도였음. 보도는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기성세대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비행 청소년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10대 남성의 성범죄는 왕성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실수’로 여기고, 10대 여성의 ‘일탈’을 ‘문란함’으로 비난하는 풍토는 기성세대의 유산이고, 이런 교육과 문화가 N번방 사건을 낳았다”, “순진무구함, 순결함,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딸 같아서’. 여성 청소년한테 늘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행 청소년’이 되죠” (중략) 우리 사회가 여성 청소년에게 지우는 ‘순결’과 ‘성적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이미지는 여성 청소년이 협박을 당하고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등 뿌리 깊은 유교적, 가부장적 성 인식, 훈육 집단으로 전락한 가정환경, 성교육의 부족 등의 문제를 청소년 대상 심층 인터뷰로 전달했음.



나. 성폭력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며 선정적 표현에 주의해주세요.

☹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2018.5.17.)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 피해자를 다뤘음. 성폭력 과정에 대한 선정적, 구체적 묘사에 치중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10분이면 구입 가능” 논란의 ○○(○○○) 유통실태 추적>(2019. 2.8.)은 성폭력에 악용되는 약물의 유통과정, 입수 과정, 효과 등을 상세히 보도함. 특히 “색과 향이 없어 술이나 음료에 섞어도 티가 나지 않고 무엇보다 약 성분이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거나,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절하게 만들어 기억도 못 한다”, “여성이 복용하면 기분이 업되고 성욕이 매우 높아져 약발에 취해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애교 떠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모방범죄 우려가 있음. 성폭력 범죄가 지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여과 없이 노출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다. 성폭력 원인을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성욕, 여성과의 접촉 등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 <○○○ “성추행 죄의식을 가지면서 욕망 억제 못해”>(2018.2.19.)는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라는 가해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음. 또한, 제목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넣어 부각함.

라. 가해자 이야기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말아주세요.

- ☹ 문화계 인사 ○○○의 성폭력을 보도하면서 <결국 고개 숙인 ○○○... “성폭행은 인정 못해”>(2018.2.19.) <○○○ 공개 사과... 성폭행 의혹엔 “강제 아니었다” 부인>, <“추행 맞지만 성폭행 아니다”>(2018.2.19.) 등 가해자 주장을 따옴표로 제목에 인용했으며, 보도 내용에서도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적시했음.
- ☹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네”...○○경찰서 ‘집단 성희롱’ 16명 연루>(2021.6.22)는 ○○○경찰서에서 집단으로 이뤄진 신입 여성 경찰관 성희롱 사건을 다뤘음. 그러나 “음란하게 생겼네”, “가슴 들이밀어라”와 같은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제목에도 명시했음. 명예·신용 훼손 금지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



마.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지 마세요.
- 특히 기사 내용 중에서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의 주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정보의 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016년 섬마을 교사 성폭력 사건 당시 여러 언론이 범죄가 발생한 관사를 그대로 촬영했음. 방송사는 리포트를 하면서 관사를 보여줬으며, 신문사도 관사를 촬영한 뒤 확대해서 노출했음. 관사 인근 거리까지 촬영해 피해자가 재직할 학교는 쉽게 특정되었음. 심지어 이런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가 지목되었음. 그러나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의 동료 교사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음. 해당 학교는 매우 작은 섬이어서 관사 노출만으로도 학교가 특정된 것임.

-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것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아닙니다.

☹️ 정치인 ○○○ 성폭력 사건 공판 당시, 언론은 재판에서 나온 사적 자료를 그대로 보도했음. 2018년 7월 3일은 피해자 ○○○ 씨의 의료기록을 언급하며, 누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음. <○○○ 첫 재판…○○○이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엔>, <○○○ 첫 재판, 검찰과 ○○○ 측 산부인과 진단서 증거로 제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 ○○○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등 다수 언론이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해 보도함. 개인의 진료기록은 사생활 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피해자가 재판을 위해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또는 재판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언론이 그 내용을 임의로 보도해도 되는 건 아님. 언론이 이를 보도할 때에는 ‘○○○ 씨가 성폭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병원 기록’ 정도로 표현하면 될 사안이었음.



-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하면 안 됩니다.

☹ 2012년 성폭행범 ○○○이 나주 초등생을 성폭력 한 사건 당시, 일부 언론은 ▲마치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왜곡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집안 내부를 불법 촬영해 보도 ▲병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해 아동에게 상의를 올려보라 한 뒤 상처 부위를 찍어 피해자의 눈·코·입이 가려진 채 얼굴 전체에 든 시퍼런 멍, 파랗게 질린 입술, 눈가의 구타 흔적, 배, 허벅지, 옆구리 등 온몸이 드러난 사진 10여 장을 보도 ▲피해자 집 위치, 가족의 월 수입,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독서록, 노트, 그림일기까지 공개함. 이에 피해자 가족은 2013년 7월 5개 언론사에 총 4억9,200만 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2014년 총 1억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함.

바. 피해자의 복장, 음주 여부, 성격, 평판, 성적 지향 등을 언급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피해자다움이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말합니다. “왜 더 저항하지 못했나?”,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보고도 어떻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나?” 등의 시각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오빠 없으면 난 약(弱)○○” ○○○이 공개한 ○○○·○○○ 문자 어땠길래>(2019.2.21.)는 ○○○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다루며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임. 가해자 주장을 상세하게 여과 없이 보도했음.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사. 피해자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방송사 시사 토크 프로그램(2018.6.25.)에서 여성 청소년 살인사건을 다루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했음. 특히 피해자가 '원조교제'나 '몸캠', '야외 누드사진'에 합의하고 따라나섰을 가능성을 거론하여 강력범죄의 책임이 피해자에 있을 수 있다고 예단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 주의 조치



아.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에 유의합니다.

- ⊖ <○○○, ‘좋아서 붙어먹고’ 올림픽 응원하는 마음까지 ‘뿔났다’... 일본은 ‘육상계 패닉’으로>(2019.1.14.)에서 네티즌들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난 댓글을 인용 보도함. 이는 미투 폭로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 <“X녀, 걸X, 잘 봤다 네 XX”...○○○ ‘유출 사진’ 보고 조롱한 누리꾼들>(2018.5.17.)은 유튜브의 미투 사건을 보도했음.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피해자를 향한 혐오 표현을 여과 없이 인용하며 제목으로까지 부각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자. 구체적 근거 없이 성폭력 피해자가 ‘가짜 미투’를 했을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2019.1.25.)은 일명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이 많으며, 이들이 이를 통해서 부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함. 특히 “A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합의금만 무려 3억 원을 날린 적도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중략) 만 18세 미성년일수록 합의금은 높아 로또 사는 것보다는 남성들을 유혹 성폭력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낫다는 평이 나돌고 있다. (중략) 로또보다 더 좋은 수입은 성폭력으로 남성들을 유도하며 합의금 뜯어내는 신종 수법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의 사례를 보도했음. 이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고 미투 폭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윤리 위반, 차별금지 위반 등으로 시정권고 조치

3) 성매매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세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도해주세요.
- 성매매 피해 여성, 성착취 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사업 등에 대해 부적절한 여론을 단순 중계하는 보도를 지양해주세요.

☹ <성매매 여성에 2천만원대 지원…철거 앞둔 ‘옐로우 하우스’ 형평성 논란>(2019.1.8.)은 성매매 여성 재활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다룬 보도임. 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불법으로 성매매한 여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함. 특히 “열심히 노력해도 학자금에 허덕이는 청년들이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 성매매 여성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큰돈을 지원받는다니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노력과 희생을 강요받고 살아온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는 등의 비판을 그대로 보도함. 오랜 기간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방조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은폐한 채 개발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터부시하고 매도한 여론을 불필요하게 인용한 것임. 일부 반론을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성매매 여성 쫓아내면 여성들은 어디에 가서 사나?’, ‘다른 지역에 가서 성매매하라고 할 순 없지 않나?’ 등 수세적 발언만 인용하여 성매매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근본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한 보도였음.



나.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기존 표현	대안 표현	권고 사유
고객, 손님	성구매자, 성구매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손님’은 성을 구매하는 자를 높여 부르는 것이며, 성구매 행위를 인정하고 여성의 성상품화를 옹호하는 용어임. 성매매 업소에서 실제 사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사회적인 용례를 비판할 때는 ‘고객’, ‘손님’ 등 작은따옴표를 붙여 표기하는 것이 적절함.
사창가, 홍등가 집창촌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창가’는 ‘사창들이 많이 모여서 밀매음하는 거리’라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에 공창제가 도입되던 당시 관의 허가 없이 성매매가 이뤄지던 곳을 일컫는 용어임. - ‘홍등가는 과거 중국에서 붉은 등을 켜고 성매매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린 것에서 유래된 표현임. - ‘사창가’, ‘홍등가’, ‘집창촌’은 성매매 집결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성매매업소’나 ‘성매매 집결지’로 표현하기를 권함.
윤락, 매춘, 매매춘, 성매매춘,	성구매, 성매매, 성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락(淪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져 여성의 성 도덕적 규범만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용어임. -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성매매춘’ 등에서 사용되는 춘(春)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봄에 비유한 것으로 성매매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매매를 낭만화하는 용어임. - 행위의 본질에 걸맞게 ‘성구매’ ‘성매매’로 표현하거나, 더 나아가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를 가진 ‘성착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하기를 권함.

기존 표현	대안 표현	권고 사유
<p>창녀, 윤락녀, 매춘부, 꽃뱀, 성매매 종사자, 여종업원, 원정녀</p>	<p>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해외 성매매 여성</p>	<p>- '창녀'는 성매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윤락녀'는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의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보는 성차별적 용어, '매춘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봄에 비유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을 물화·대상화하는 표현, '꽃뱀'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성매매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 표현, '성매매 종사자',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사회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임.</p>
<p>원조교제, 조건만남, 청소년 성매매</p>	<p>청소년 성착취</p>	<p>- 원조교제, 조건만남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지칭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청소년이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받고 성매매에 응했다는 인식을 하게 해 부적절한 표현임.</p>
<p>성매매 청소년</p>	<p>성착취 피해 청소년</p>	<p>- 따라서 '청소년 성착취'라고 표현하기 바람. 성착취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로 성착취 피해 청소년으로 표현하기 바람.</p>



다. 성매매를 흥미 위주로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요즘 유행하는 ‘립카페’ 알고 보니...>(2018.5.30.)는 신종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면서, 서비스 내용과 행위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불법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담지 않았음. “주머니 사정이 시원치 않은 남자나 시간이 없는 남자들도 립카페는 들락거리기 딱 좋다. 자동 안마기기도 있어 안마와 커피, 그리고 여성이 입으로 해주는 ○○○○까지 3종 세트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이 낮에 잠깐 들러 후딱 즐기기에 더할 수 없이 좋다. (중략) 아내들이여, 테크닉을 전수 받으러 립카페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보도함.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등 매우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기사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성매매 적발 건을 보도하면서 돈이 오가는 거래로 묘사하는 삽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마사지 업소 가장 유사성행위 알선 30대 업주 실형>(2021.10.20.), <오피스텔 120개 빌려 기업형 성매매...성매수 1만명 ‘벌벌’>(2021.10.7.), <‘성매매 업소 대기실, 신체 마사지’...19금 영상 난무하는 유튜브 쇼츠>(2021.10.13.) 등은 선정적 삽화, 성매매가 이뤄진 방의 내부 구조, 유튜브에 올라온 여성의 노출 사진 등 부적절한 시각 자료를 내보냈음.

라. 언론은 성매매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 방송의 시사토크 프로그램(2016.6.15.)에서 2016년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피소 건을 보도하면서 익명 종업원의 “성폭행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성폭행은 소리만 질러도 화장실을 저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저희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전함. 이는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성매매’이지 ‘성폭행이 아닐 것’이라는 메시지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며, 성폭행을 고발한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5. 성평등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성평등을 위해서 언론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평등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성평등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신문보도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2021.7.12.~8.16.)는 치안·산재·채용·출산 등 여러 데이터에서 성별을 분리하지 않아 여성의 현실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다룸. 산재 관련 법제도정책에서 여성 노동의 누락을 지적하기도 했음. 해당 보도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했으며, 법과 제도 영역에서 어디서부터 개선할 것인지 짚어볼 수 있게 해주었음. 이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양성평등 미디어상 보도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함.

☺ 공군 ○○○ 중사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은 2021년 모 방송사의 단독보도로 국민에게 알려졌음. 해당 방송사는 보도윤리를 지키면서, 군 수사상의 축소 은폐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완결성 있는 보도를 했음. 보도 이후,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전면적인 재수사를 했으며, 공군 참모총장 사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음.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해당 방송사뿐 아니라 다양한 신문사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재했으며 방송사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가능했음. 해당 보도는 2021년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양성평등 미디어상 대상, 노근리 평화상 등을 수상함.

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 구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을 한정된 성차별적 접두사(여검사, 여교수, 여경, 여류작가, 여류화가 등)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도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해주세요.

다. 특정 성을 희화화, 조롱, 모욕, 멸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특정 성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는 김치녀, 된장녀, 맘충, 한남충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사건·사고의 특징과 성별을 합성한 표현(토막살인녀, 트렁크녀, 대장내시경녀)는 매우 부적절하며 인권침해적 표현이니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폄하하고 멸시하는 의도가 담긴 김여사, 솔뚜껑 운전사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 성 역할을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8.10.9.)에서 재벌가 남성과 결혼한 여성 아나운서 사례를 나열하며 특정 성별과 직군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음. 특히 “아나운서가 재벌가 머느릿감 1순위”, “아나운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발언하여 여성 아나운서의 가치를 재벌가와 의 결혼 여부로 평가하고 해당 직업군의 전문성을 폄훼, 성차별적 관점을 드러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

⊖ 라디오 방송(2017.9.13.)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야구선수의 결혼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 진행자가 “○○○ ○○선수도 ○○○○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선수도 ○○○ 슈퍼모델 출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간 거예요, 뭐예요?”, “○○○ 이분은 또 훌륭한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결혼, 미녀라 그럴까요? 뭐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마음이 예뻐야지” 등의 발언을 함. 유명 운동선수와 결혼한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며 ‘외모를 이용해 돈을 따라 결혼한 인물’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여성 일반에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것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항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마. 가부장제를 우리 고유의 미덕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 ⊘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동산 매입을 결정했다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발언을 보도한 <○○○ 대변인 누구>(2019. 3. 29.)는 기사의 소제목으로 <○○○ 마지막까지 남의 탓, 아내 혼자서 내린 결정 ... 참 나쁜 여자 돈에 눈이 어두워 ○○○ 대변인 남편 인생을 망친 셈>이라고 적시함. 보도 내용에서도 “돈에 눈이 어두워 ○○○ 대변인 남편의 인생을 망친 꼴이 됐다.”고 표현. 이는 가부장제도 내 부부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여 행위를 평가한 사례라 할 수 있음.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 <명품 몸매는 셀프 공개! 시선 강탈 비키니 여왕>(2019.7.31.)은 여성 연예인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음. “여름, 여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바닷가 비키니 사진 공개...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굶고 땀내는 스타들이 있는데요.”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여성의 신체를 선정적 이미지로 처리해 여성은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적 제재인 ‘주의’ 조치



☹️ 라디오 방송(2019.8.14.)에서 “(특정 여성 가수에 대해) “하체 예쁜 가수. 하체가 단단한 가수”, “또 퍼포먼스가 좋고. 몸매가 남성들의 굉장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저도 이걸 아직 제가 허벅지를 톡 찢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제가 꼭 한 번쯤은 접촉을 한 번 해보고. 이게 미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라고 발언.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한 것은 물론이고, ‘여성에게 미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신체 접촉을 해보겠다’는 등 사실상 방송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례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조치

사. 성차별 시정 조치를 역차별로 매도하거나, 근거 없이 폄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9.2.19.)에서 해당 안내서 내용에 따라 출연자 성비를 맞춘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쓴 채 양손으로 가발을 쓸어 넘겼음. 함께 출연한 여성 기자 역시 긴 가발을 쓴 남성 기사를 보며 웃고, 가발을 쓴 남성 기자의 가슴에는 CG 이미지로 분홍색 리본을 표기했음.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이미지, 고정관념을 적극적 행위와 장치로 표출한 것이며, 특정 성별을 희화화했다고 지적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아.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성매매'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빌미를 주었다거나, 원인 제공을 했다거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육군 소령, 10대 여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협박>(2019. 7.31.), <'10대 여학생 성매매' 현역 육군 소령 체포>(2019.7.31.) 등의 보도에서 육군 간부의 청소년 성 착취를 “돈 주고 성관계”한 것으로 치부함. 해당 보도는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 했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과 범죄 사실을 축소함.

☹ <사이버·모바일 상에 번지는 '사이버꽃뱀'>(2021.4.4.)에서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고교생 꽃뱀까지 생겨나고 있다. 등록금이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란다. 젊은 꽃뱀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남자를 유혹해 돈을 뜯어낸다. 이제는 꽃인지 꽃뱀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 됐다.”고 보도했음. 여성이 일반적으로 ‘꽃뱀’ 행위를 했다는 식의 표현은 부적절함.



2) 성평등 취재 시 유의사항

가. 언론사는 기자, 방송 진행자, 출연자, 취재원, 토론자, 칼럼 참여자 등의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한겨레>가 2월 1~5일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등 5개 일간지 종합면에 실린 보도사진 속 주요 등장 인물(군중 사진 제외)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보도사진 325장 가운데 여성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진은 49장(15%)에 그침. 언론사별로는 <경향신문> 27.9%, <한겨레> 23.6%, <중앙일보> 17.5%, <조선일보> 11.6%, <한국경제> 11.4%

○ 서울YWCA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20년 9월1일~21일까지 방영한 지상파·중편·tvN의 22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성은 21.3%(71명)인데 비해, 남성은 78.7%(262명)으로 3배 많았음. 진행자 성비는 남성 75%(24명), 여성 25%(8명)

나. 사건·사고 발생 시, 혐오 범죄가 아닌지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저지른 사건이므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경찰 발표 등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이 있었음.

다. SNS 등의 성차별·혐오 주장에 대한 보도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칫 소수의 주장이 과잉 대표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백래시 분위기 속에서 특정한 손가락 모양이 페미니즘의 상징이라며 상업용 광고 및 관공서 등의 홍보 이미지 속에서 엄지와 검지로 물건을 잡는 모양을 찾아내서 억지 논란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태가 불거짐. 이 논란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이 사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기보다는 혐오성 주장을 전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었음. <“저 손모양 뭐냐” ○○○ 포스터에 ‘이대남’ 발끈한 이유>(2021.5.2)는 ○○○ 측의 사과 소식을 전했는데, 제목에도 이대남이 발끈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표현함. <‘○○○ 사장에게 문자도 보냈는데...’ ○○○○ 논란 후속 조치는?>(2021.5.10.)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서 보도했는데, 여기엔 “당신이 메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처음에 메갈 논란이 생겨난 건 소비자가 아니라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당신이 메갈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등의 주장이 담겼음.

⊘ <“펜스룰이 최고”...‘반감’ 커지는 20대男, 왜?>(2019.7.22)는 20대에서 격심해진 젠더 갈등을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임. 그러나 ‘펜스룰에 대한 찬성 발언’을 지나치게 많은 케이스로 자세하게 인용하여 ‘펜스룰’을 논쟁의 가치가 충분한 공론의 대상으로 묘사했음.



☹️ 2021년 코로나19 안센 백신을 예비역 대상으로 접종하자 <“안센 여 먼저 맞으면 나라 뒤집히냐” 여초서 남녀차별 논란>(2021.6.1), <‘건장한 남자들이 왜 먼저냐... 일각서 안센 접종 ‘남녀 차별’ 불만>(2021.6.1), <“안센 접종 ‘남녀 차별 불만...”여자가 먼저 맞으면 나라가 뒤집혔겠지>(2021.6.1) 등의 보도에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것이 ‘남녀 차별’이라고 반발한다고 보도했음. 특히 일부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많았다’고 단정적으로 썼는데, 다른 언론이 <팩트체크안센 예비역 접종에 ‘남녀 차별’ 글 정말 많았나>(2021.6.14)에서 이를 확인해보니 이 시기 백신 글이 게시된 커뮤니티 내 안센 백신 관련 게시글은 68건이었고, 이중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은 단 3건뿐이었음. 차별을 주장하는 3건의 글이 이 커뮤니티를 대표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은 것도 아니었음.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글이 올라온 건 맞지만, ‘많다’고 보기 힘들고 주목도가 높은 글도 아니었음.



6. 장애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언론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장애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권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장애인 차별은 잘못된 사회의 시선, 불평등한 제도나 정책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장애 교원 부족 실태 연속보도>(2021.7.21.~8.3.)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사를 뽑지 않아 낸 벌금액이 385억이라고 보도함. 장애인 교사가 없는 이유, 이로 인한 문제와 해결방안도 잘 살펴봤음. 특히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음. 이 보도는 장애 교원 부족 실태에 대해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달의 기자상을 받음.

😊 <탐사K/코로나19 장애인 대책 있나>(2022.2.8)는 코로나19 피해 여파를 가장 혹독하게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다각도로 짚었음. 코로나19 진단, 격리, 활동지원, 재택치료 돌봄 지원 등에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줘, 독자들의 공감을 높였음. 해당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음.



- 장애인 시위 등이 발생했을 때, 시위로 인한 불편만을 부각하지 말고 장애 차별 현실과 개선방향을 함께 짚어주세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의 지하철 타기 선전전 등을 보도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가 매우 많았음. 장애인 단체의 시위 이유와 배경, 한국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높 이려는 노력도 필요함.

나. 장애인의 자존감을 존중해주세요.

-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지켜주세요.
- 언론 노출 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세요.
- 촬영을 허락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주세요.

☹️ <○○○의 멈춰버린 시간>(2019.7.27.)에서는 장애인의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일부 흐림 처리된 장애인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 장애인의 어머니가 관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근접 촬영된 장애인의 둔부가 일부 흐림 처리된 채 노출되는 장면, 침대에서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로 앉아 있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흐림 처리된 장애인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이 방송되었음.

**다. 장애에 대한 분류와 정확한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 장애의 분류와 정확한 명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척추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 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 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직장, 대장, 소장이나 방광자율신경 등의 손상 으로 인한 배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 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비하 용어	자제 용어	권장 용어
	정상인, 일반인 (장애인의 반대 말로 쓰일 경우)	비장애인
불구자, 병신, 불구, 애자	장애자	장애인
앉은뱅이, 절름발이, 절뚝발이, 찔뚝이, 찌따, 조막손, 육손이,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 팔이, 꼬추, 곱추, 곱사등이,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애꾸, 사팔뜨기,	장님, 소경, 봉사,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말더듬이, 병어리, 아다다, 아자		언어장애인
백치, 저능아, 바보 천치,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또라이, 얼간이, 띠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정신분열증, 정신장애	조현병
언청이, 언청새님, 꾀보, 흑부리		안면장애인
배냇병신		선천성 장애인
간질환자		뇌전증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라.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구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앓다 △병 어리장갑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눈 뜯 장님 △눈먼 돈 △외눈박이 ○○ △깜깜이 회계 △절름발이 ○○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 <하프타임병어리 냉가슴 앓는 지역 예술인>(2020.5.11.), <FIBA 아시아 오락가락 행보, KBL·WKBL 병어리 냉가슴[MD이슈]>(2021.2.14.), <○○○ ‘도쿄 아파트’에 맹공... “꿀 먹은 병어리”>(2021.3.21.), <“나랏 돈 =눈먼 돈 아니다”...1년간 ‘453억’ 환수한 권익위>(2021.4.9.), <순천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외눈박이 의결’ 비판>(2021.5.17.), <눈 뜯 장님 아니고서야...다중 이용 판매시설 불법 방치한 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2021.6.9.) 등 언론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관용구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은 표현은 지양해야 함.

마.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장애 자체보다는 사람에 집중해주세요.



바. 장애인에 대한 동정을 유도하는 감성적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말아주세요.

☺ <장애는 내 아들 개인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2018.12.19.)는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가 칼럼 집필, 강연,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보도함.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보장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눈설위원의 뉴스 요리장애인 부모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2021. 5. 13.)은 종종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상황을 전하는 보도인데, 부모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를 매우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음.

사. 장애인의 성취 결과를 보도할 때,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유의해주세요.

-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표현해주세요. 장애인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 ‘신체는 못쓰지만 정신만은 멀쩡하다’, ‘장애를 입어도 밝게 산다’, ‘비참하지만 의연하다’,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라는 식의 표현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세요.

☹ <브레이크 댄스 국가대표 ○○○, 청각장애 딛고 일어난 사연 '감동'(노는 언니)>(2021.6.2.)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브레이크 댄스 국가대표의 이야기를 전했다. 보도에서 장애에 대한 내용은 “○○○ 역시 춤을 통해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했다는 고백과 함께 청각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연은 감동을 일으키기까지 했다.”라는 한 문장뿐이었는데, 이를 제목에 넣어 '장애 극복 스토리'를 부각

☹ <소아마비 장애 딛고 40년 수학 난제 첫 해결… ○○○교수 “자신을 믿어야 성공할 수 있어”>(2021.12.22.)에서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 교수는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걷지 못하는 장애가 생겼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거절당하기도 했던 그는 모친의 헌신적 보살핌으로 13세 때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데 기적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도함. 장애보다는 그의 학문적 성과를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음.

아. 운동선수의 장애를 선정적으로 부각하거나,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⁴⁾가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당시 10대 일간지를 모니터링한 <모니터링 리포트>에 따르면, 스포츠 보도에서 피해야 할 내용으로 △장애인을 '인간 승리의 드라마' 혹은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 △'소아마비를 딛고'처럼 '장애 극복'을 강조 △신체 손상을 상세하게 부각하거나 장

4) 장애인 스포츠 보도 관련 사례는 <2021년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애와 질병을 동일시 △장애를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 등으로 묘사 △장애인 가족(특히 배우자와 어머니)을 죄인 또는 영웅으로 묘사 등을 꼽았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보도가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2021 도쿄 패럴림픽 당시 공영방송사는 저녁 종합뉴스의 패럴림픽 코너를 장애인 앵커가 진행했음. 메인뉴스 진행에 장애인 앵커가 출연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장애인식 개선과 국민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간승리 드라마’ 2020 도쿄패럴림픽, 24일 개막>(2021. 8. 22) △ <‘인간 승리 드라마’ 패럴림픽에 성원과 관심을>(2021. 8. 23) 등과 같이 유독 장애인 올림픽만 ‘인간승리’ ‘드라마’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장애인을 동정적, 시혜적으로 보는 시각이므로 지양해야 함.

☹ <팔이 없으면 입으로... 이것이 패럴림픽(2021.8.28), <다리를 못 써도... 우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2021.8.23), <발로 공 띄워 서브... 양팔 없어 라켓 물고 스매시>, <세계 유일 손발 없는 펜싱선수, 패럴림픽 2연패>(2021.8.27) 등과 같은 제목은 선수의 이름이 아닌 장애 상태를 알리는 것이었음. 선수의 이름을 보도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음.

☹ <청각장애를 넘어 ‘프로의 꿈’... 그의 곁엔 늘 아버지가 있었다>(2021. 8.31.)은 야구선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헌신을 중점적으로 보도함. 이처럼 가족의 희생을 강조해 영웅으로 묘사하는 보도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경기도 비장애인 경기처럼 경기내용과 성과 위주로 보도해주세요.

⊘ 2021년 올림픽 수영 ○○○선수를 보도할 때는 “○○○는 8명의 선수 중 가장 빠른 0.58초의 반응 속도로 출발했습니다. 초반 스피드는 경이로웠습니다. 100m를 49초 87에 주파했는데 세계기록보다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2위와 큰 격차를 벌리며 150m까지 1위였지만, 막판이 아쉬웠습니다. 체력을 소진한 ○○○는 점점 힘이 빠졌고 결국 1분 45초 26, 7위로 레이스를 마칩니다.”라고 보도했음. 반면 직후 열린 패럴림픽 ○○○의 경기에 대해서는 “가슴의 태극기를 두드리며 당찬 모습으로 결승에 나선 ○○○.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물살을 가르니다. 혼신의 역량을 펼친 ○○○은 개인 최고 51초 58의 기록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라고 보도함. 장애인 선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런 기록을 냈고 몇 위를 했다’로 마무리해 비장애인 보도와 차이가 났음.

- 선수가 장애를 갖게 된 경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가 쓴 ‘패럴림픽 금(金) 15개 스토리’>(2021.08.26.)에서는 “○○○는 왼팔에 장애가 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왼팔이 탯줄에 감기면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기능도 약하다. 왼손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고 장애를 상세히 보도함. 스포츠 중계를 할 때 캐스터와 해설자들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전하는 경우가 많음.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천재다'처럼 특정 유형의 장애인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며, 이런 고정관념은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폐=천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다양하다>(2022.7.20.)와 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범주와 특성 등을 설명하고, 천재성에 대한 오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도하는 내용은 바람직합니다. 해당 보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극복하거나 없애야 하는 상태가 아니다”며 “다만 사회적 기술 훈련과 문제 행동 치료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치료의 목적”이라는 의료인들과 자폐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담았음.

차. 비하 발언이나 악플 등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2021.1.29.)는 장애인인 유명인의 배우자에게 장애를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음. 그러나 보도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과 심각한 혐오 표현, 2차 가해 글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④항(선정보도의 금지) 등 위반으로 한 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

☹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8.6.7.)에서 만취한 채로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추돌한 후 도주한 사건을 주제로 대담했는데, 출연자가 “저런 경우는 만취자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발언했음. 이 사건은 만취자에 의한 사건·사고임이 명백했음에도 정신장애를 ‘사고를 낸 만취자’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한 것임.

카. 장애인이 범죄에 연관되었을 때, 장애를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특히 범죄 발생 시 정신장애인 연관성을 추측해 보도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라면줄게 말하지마” 정신병원서 60대 환자, 10세 남아 성폭행 의혹> (2021.10.15.)는 일반적인 경찰발 범죄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였음. 아직 사건의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 성폭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라고 보도함. 정신질환과 성범죄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기사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정신질환 환자’로 반복 묘사할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울 수 있음.

☹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7.6.18.)에서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초등 학생을 유인 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대담 중 진행자가 10대들의 SNS 문화와 게임 등을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야기 했음. 그런데 해당 발언 뒤에 맥락 없이 “그런데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을 더 분간을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빠지고 심취하면 사실상 걸어 다니는 폭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음.



라. 장애인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와 장애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을 때는 장애를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천원 안 줘서”>(2021.5.5.)은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60대 남성을 공격했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었다’라고 언급함. 또한 방송 화면 하단부에 <피의자, 조현병 병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라는 자막을 노출하는 등 피의자의 정신질환과 해당 범죄와의 인과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신질환이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의견제시’ 조치

☹️ <아기 창박으로 던져 죽인 발달장애아 ‘무죄·치료감호’ 확정>(2016.11.24.)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는 식으로 묘사했음. 이런 보도는 ‘장애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



7. 정신질환 보도와 인권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 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2022년)을 참고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수의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1) 정신질환과 관련 용어 사용에 유의해주세요.

가. 다음과 같은 표현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야 하는 표현	설명
(정신질환자) 잔혹범죄, 참극, 난동, 흉기 테러, 시한폭탄 등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이거나 자기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
(정신질환자) '낙인 찍혀', '꺼리는', '불명 예스러운' 등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정신병자 취급하다. 정신병적 범행, 정신병자 같은 행동 등	정신질환에 빗대어 심각성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표현

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순화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양하는 표현	권장하는 표현
괴짜, 미치광이, 광인, 정신병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로 진단받은
비정상적인 행동, 기괴한 행동	흔치 않은 행동, 이상행동
(병원에) 갇힌, (병원) 신세, 감금, 끌러가다	(병원에) 치료중인,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회복 중인



2)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길 권합니다.

☹️ <“편의점도 차려줬지만” 정신질환자 존속살해 비극, 언제까지>(2022. 2.17.)는 모든 정신질환자를 패륜 범죄자로 간주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소지가 큼. 보도 내용에는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정작 제목에서 ‘정신질환자’와 ‘존속 살해’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세 가지 용어로 정신질환자의 존속살해 비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연상시킴.

☹️ <치료방치 끔찍한 범행으로 조현병 존속범죄, 치료·복지 연계 절실>(2022.3.26.)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복지 연계라는 정책적 대안을 다루고 있지만, 보도 제목에서 ‘끔찍한 범행’, ‘조현병’, ‘존속범죄’라는 자극적인 세 단어를 사용하여 독자가 대책에 대한 관심보다 조현병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우려가 있음.

☹️ <조현병 40대, 흥기 들고 파출소 난입… 테이저건으로 제압>(2022. 10.27.)은 제목에 사용된 ‘조현병’, ‘흥기’, ‘파출소 난입’이라는 용어로 인해 조현병의 위험성을 강조했음.

☹️ <“제2의 ○○○” 될 뻔. 부탄가스 560개 쌓아두고 불 지른 남성>(2022.10.27.)은 정신질환자 관련 화재사고를 다루면서 사망자 5명, 부상자 17명을 낳은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름을 사용했고, 보도에서도 그의 사진을 사용함. 이러한 보도는 시민에게 해당 사건과 ○○○ 사건을 동일시해 불안감을 키울 수 있음.

3)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 및 강력범죄 비율은 각각 0.6%, 2.2%(경찰통계 연보, 2020)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정신질환자와 연결짓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조현병 환자 ‘묻지마 범죄’, 5명 중 1명은 감형받았다>(2020.6.17.)는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범죄에 대해 이유없이 면죄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시비 걸고 고의 추돌...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어쩌나>(2022.9.14.)는 정신질환 운전자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 운전자의 사고통계나 근거에 대한 취재가 부족함. 충분한 근거 없이 마치 정신질환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양산한다는 듯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음.



4)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기를 권합니다.

☹️ <어느 고시원 20대女 남기고 간 쓰레기...전문가 “조현병 의심”>(2022. 7.11.)은 여성이 쓰던 고시원 방이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전문가의 언급만으로 무조건 ‘조현병’으로 추정하고 이를 제목으로 보도함. 이런 보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키워 정신장애인이 주거임대차 관련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분노 사회 대한민국... 4명 중 1명 또 우발 범죄>(2022.8.12.)은 우리 사회에 우발범죄가 늘고 재범률이 높다는 기사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조기 치료와 소득불평등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단순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정신질환으로 진단받는 것은 구별되어야 함에도 이 기사는 이를 구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우발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음.

5) 관련자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권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이나 잔혹성을 강조하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세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포함해주세요. 관련자 의견을 보도할 경우, 내용 변경이나 각색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6) 정신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www.mentalhealth.go.kr>),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실 것을 권합니다.



8. 이주민, 난민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는 이주민, 외국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주민, 난민 보도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주민·난민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공존:그들과 우리가 되려면>(2022.1.17)은 5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경기 안산시 이주민을 만나, 그들의 개인 생애사를 가감 없이 보도함. 기존 이주민 보도와 달리, 이주민 아이들의 시선을 잘 담았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명했음. 특히 한 초등학교가 민원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정도로 인근 한국인 학부모 상당수가 OO초등학교를 기피하는 ‘코리안 플라이트’ 현상이 나타나 한국인 학생이 6명뿐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공존에 따른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을 잘 짚었음. 또한,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국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이주민의 계층이동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음.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음.



나. 이주민·난민을 폄훼, 모욕, 비하, 조롱, 차별,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처음엔 차별적 의미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남용을 통해서 의미가 변질된 용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주민·난민을 향한 혐오표현엔 말이나 글뿐 아니라 몸짓, 무시, 침묵 등의 행위, 기호,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표현	순화 표현	권고 사유
다문화 가정	이주민 가정	‘다문화가정’은 널리 쓰이는 단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통 동남아시아 국적의 국제결혼가정, 이민자 가정 등의 가족 형태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됨. 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틀로 이용되며, 멸시와 차별, 혐오로 이어지기도 함. 따라서 다문화가정 대신 이주민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권함.
조선족	중국동포 재중동포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은 애초 비하의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님. 그러나 오랜 기간 ‘조선족’은 미디어를 통해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은 것처럼 묘사되었고,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2018년 4월 27일,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서울시의 모든 공문에 적용되는 행정용어에서 ‘조선족’을 ‘중국동포’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한편 국립국어원과 한국어문기자협회가 만든 <이런 말에 그런 뜻이? - 차별과 편견이 낳는 말들>(2010)에서는 ‘조선족’을 ‘재중동포’라고 부를 것을 권함.

- 이주민들의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어서 와 한국은 두 번째지?..코로나 탈출 불법체류자 ‘재입국 허용’?> (2020.3.8.)은 미등록 외국인이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코로나 탈출 불법 체류자’, ‘역대급 혜택’ 등으로 표현함.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이전부터 법무부가 체류 관리 목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임에도 마치 미등록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처럼 오인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임.

⊘ <사실‘無비자 제주’ 악용한 불법 입국 정부가 막아야>(2018.9.27.)에서는 “제주도가 2002년 특별법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제주는 국제 관광 도시가 됐다. 그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 테러범이나 불순 세력의 잠입 통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주장함. 무비자 입국을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들어 ‘불법체류자 급증’을 이와 무관한 난민과 연관시켜 ‘테러범’, ‘불순세력’ 등으로 암시했음.



- ‘난민’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아파트 전세 난민 이곳으로 몰리니…빌라 전셋값도 ‘경총’>(2021.8.5.) 등은 재화·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난민’으로 표현하고 있음. 난민이 아닌 사람에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표현이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난민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인권 침해를 은폐하고 난민 개념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음.

☹️ <“비정규직은 코로나 노동 난민…실직 경험 31%로 정규직 7배”>(2020.9.21.) 보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백신 부족 사태, 일자리 부족 현상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코로나 노동 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밖에도 <코로나19에 ‘의료 난민’된 치매노인…장애인 이중 차별까지>(2021.8.20.), <부스터샷으로 세계 양극화…‘백신 난민’ 생겨나나>(2021.8.12.) 등 난민을 빗댄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다. 이주민·난민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당사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이주민·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특히,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외국인과 난민의 존재 여부부터 언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불안한 주민들...제주서 불법체류자 범죄 잇따라>(2020.4.10), <20대 취준생 죽게 만든 가짜 '○○○ 검사' 잡고 보니 조선족이었다>(2020.5.14), <"담배 좀 달라"며 한국 남성 습격해 돈 뜯어내고 달아난 난민 신청자들>(2020.8.14) 등의 보도는 불법체류자, 이주민, 중국동포, 난민, 난민 신청자 등의 범죄를 강조하여, 이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차별적 인식을 부추김.

☹ 방송사 시사토크 프로그램(2019.3.14.)에서 중국동포와 무관한 다른 살인 사건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예전에 그 조선족의 극히 일부 폭력, 집단이 청부를 받고 시신을 유기할 때 통에 시멘트를 부어서 바다에 집어던지는 사건", "조선족도 아니고 폭력집단도 아니고 20대 평범한 부부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발언했음. 끔찍한 중범죄나 시신 유기 등은 '조선족이나' 폭력 집단만 벌이는 것이 아닌데도 매우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중국동포를 차별했음.



-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묘사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문래동도 붉은 수돗물...“일부 이슬람 난민 소행일 수도”>(2019.6.21.)는 서울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자 ‘이슬람 난민이 수도권의 수돗물에 테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함. 보도는 “근래 국내에 급격히 유입 중인 ‘이슬람 난민’ 중 일부 ‘극단주의자’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그 근거로 “21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이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짚었으나 명백한 근거나 개연성은 없었음.

라. 전염병·재난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불황이 이어질 때, 이주민·난민을 원인 제공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주세요.

☹ <○○○ “○○○ 대표,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해야”>(2019.6.20.), <○○○, ‘외국인 노동자 혐오’ 앞세워 극우 포퓰리즘과 손잡나>(2019.6.21.) 등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옹호하고 이를 위한 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서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임을 보도함. 이처럼 정치인이나 종교인, 영향력이 있는 발화자의 인권침해적 발언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실한 근거 없이 이주민·난민 등을 감염병의 원인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2020.1.29.)는 일명 '차이나타운'을 찾아 그곳 시장이 비위생적이라고 보도함. 보도에는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행에도 노상에 진열한 채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여럿했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인들도 많았다"라면서 그 근거가 되는 장면으로 "노상에는 고기, 순대, 탕후루(각종 열매를 꼬치에 꿰어 사탕 물을 묻혀 굳힌 중국 전통 과자), 도넛 등 음식 대부분이 바깥에 진열돼 있었다. 맨손으로 길거리에 진열돼 있는 탕후루를 만지는 관광객과 목을 만지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다"고 기술했음. 또한 "○○○시장 공영 주차장 쪽 흡연금지 구역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 후 가래침을 길바닥에 뱉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보도했음. 이는 중국동포를 비위생적이고 위험에 감탄한 이들로 규정하는 보도였으며, 혐오표현에 해당될 수도 있음.



마. 이주민·난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일방적 관점으로 희화화 또는 수동적 존재나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앵커의 시선/부끄럽습니다>(2019.7.8)는 한국 남성의 이주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을 전하면서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베트남은 여전히 삼강오륜이 살아 있는 유교국가입니다. 결혼하는 처자가 지킬 네 가지 덕목, 4덕을 노래하는 이런 민요도 많습니다.(중략) 4덕은, 집안일 농사일 잘하는 공(工), 용모를 가꾸는 용(容), 언행이 상냥한 언(言), 그리고 웃어른 잘 모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幸)입니다 (중략) 순종적이라는 베트남 아내들도 모진 시집살이에 눈물지며 이런 구전가요를 읊조린다고 합니다. “며느리로 왔다가 시어미가 얼마나 잔인한지, 더 살 수 없어 친정으로 간다오...”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시어미’를 ‘한국 남편’으로 바꿔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라고 보도함. 보도는 베트남 여성의 미덕을 칭찬하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가부장적 표현은 베트남 여성 당사자에게는 불편한 요구이며 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음.

바. 이주민·난민 관련 행사, 미담, 사건 사고 등에서 흥미 위주로만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사.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민·난민의 국적, 인종 등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 인cheon공항에서 287일간 체류했던 한 난민 가족의 경우 다수의 보도에서 성명, 국적, 난민신청 사유 등의 일부 신상정보가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족은 국적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국적국에 난민신청 사실이 알려져 지인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음. 일부 언론사는 명확한 설명 없이 난민 당사자에게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신원을 노출함.

☹ 2018년 10월 20일 평등 행진의 사전행사인 난민 환영 문화제 “Refugees Welcome” 행사 당시, 취재진에 모자이크를 요청하였음에도 일부 언론이 스태프 부스를 찾아와 얼굴을 노출해야 행사가 생생하게 담길 수 있다며 모자이크 해제를 요청함.



아. 난민을 보도할 경우 난민 발생의 배경과 역사, 난민의 국제법적 권리를 명시하여 난민과 내국인 상호간의 이해와 관용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난민 촬영 시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주에서 난민 신청 절차 중인 난민의 현장 리포트 보도(2018.6.29.) 중 난민 신청인 9명의 얼굴이 그대로 방영됨. 9명 중 2명이 얼굴 비공개 약속을 받고 촬영에 응했으나 방송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1명은 자신을 촬영하는 지도 인지하지 못했음.

☹️ <풍등 날리다 고양 저유소 화재 유발 혐의 스리랑카인 체포>(2018.10.8.) 등은 수도권에서 저유소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이 한 이주 노동자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하자, 용의자의 국적을 공개하고 제목으로 강조함.



9. 노인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노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 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인 관련 보도와 인권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노인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해주세요.

😊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2020.10.3.)은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한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도임. 보도는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 문제를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냈음. 또한 코로나19가 촉발한 노인 소외 심화와 디지털 기로부터 질병, 범죄 정보와 유튜브를 통한 정보 취득, 디지털 기기와 교육을 통한 대안 제시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었음. 특히 보도는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 대안 제시에 집중하여 보도 후 여러 노인 유관 단체 등이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해당 보도는 디지털 소외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해법을 제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으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함.



- 노인의 자아실현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노인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 <GPS와 리어카:폐지수집 노동 실태 보고서>는 '한국의 빈곤 노인은 왜 폐지를 쫓냐에 대한 고민으로 보도를 시작했음. 기자는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리어카에 GPS를 부착해서 폐지수집 노동 실태를 보도함. 빈곤 노인들의 노동 시간, 노동 환경, 노동 대가를 분석하고, 빈곤 노인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진 이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과 이달의 방송기자상,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함.

- 연령을 이유로 노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노인을 위한 무임승차는 없다?”…지하철 세대갈등 재점화>(2021. 6.16.), <노인빈곤 보고서④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2020.10.19.) 등은 노인 빈곤에 대한 기획보도임. 그러나 소제목에서부터 <“노인 일자리 확충, 세금 낭비”… 청년들 무분별 노인복지 반대>로 청년의 반대를 부각. 노인 일자리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 일자리 부족과 직접 관계가 없음에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김.

나. 노인 사례 보도 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노인을 이해하는 방법 中정신적 노화…노인의 고집>(2020.1.6.)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짚는 보도였음. 세대 갈등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정신적 노화’로 한정해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했음. 특히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이들은 특히 재력이 있는 남성 독거노인이다. 재산이 없으면 정부의 복지 시스템에 기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 재산이 외려 독으로 변한 셈이다.”라는 내용에서, ‘재력이 있는 남성 독거노인은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표현은 그 상호관계성이 부족하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무능한 노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단순히 연령 문제로 연결 짓지 않고, 제도 개선의 대상으로 접근하도록 권합니다.

☹ <“여기 말곤 시간 보낼 곳이 없다” 문 닫힌 탑골 찾는 노인들>(2021. 6.19.)은 탑골 공원을 찾는 노인들을 스케치한 보도임.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다양해진 측면이 있는데, 특정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노인을 할 일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묘사한 측면이 있음. “노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탑골공원만은 변함 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사 내용도 노인 일반을 ‘변화에 뒤처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



라. 노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 한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임. 고령자와 신체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얼마나 정밀하게 부여할 것인지 2022년부터 3년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제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이 제도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만 소개하고 있음. <노인은 야간 고속도로 운전 못하나.. 조건부 면허 추진>(2021.6.7.)도 제목에서부터 ‘노인’을 명시했음. 이처럼 해당 제도가 누구를 위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만을 부각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음.

☹️ <‘우한 폐렴’ 유행인데 무상 보급한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서 내놓고 기침하는 노인들>(2020.1.30.)은 노인들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거나 “현 상황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보도함.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할 수 있음에도, 노인층만을 특정하여 문제로 부각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마.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심어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늙은 것도 서러운데”…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년 노동자’>(2021.7.4.)
 는 경비, 돌봄 등 분야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노년 노동자들의 노동 참여
 율은 늘고 있는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한다며 고령층
 노동 문제를 짚어본 보도임. 그러나 제목의 “늙은 것도 서러운데”, 본문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 장시간 노동하는 고령층 노동자”라는 표현은 노인
 의 업무 능력과 노동 능력에 대한 우려와 편견을 키울 수 있음.

☹ <“용돈 벌고 삶의 활력도”…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2021.5.24.)
 에서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데 용돈도 벌고 삶의 활력도 찾
 을 수 있어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 (중략)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
 려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종업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라
 고 보도함.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정당한 노동임에도, 노인 일자
 리라는 이유로 ‘용돈’을 벌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자칫 노인의
 노동이 지니는 가치를 폄훼하거나 노인은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바. 노인이 취약하고 허약한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55년생에 드는 복지비 6조…“노인 의료비가 폭탄”>(2020.1.6.)은 고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비와 복지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노인 의료비를 ‘폭탄’이라고 표현함. 해당 기사 전체가 55년생에 제공될 복지비용을 예측했는데, 이처럼 숫자로만 나열하여 노인에 진입하는 1955년 출생자는 물론이고,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대한다는 인상을 줌.

사.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2021. 5.1.)은 가스안전 점검원 등 고객의 집을 방문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짚는 보도였음. 성추행 등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목에서부터 ‘노인이 돌변’, ‘공포’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

아. 노인을 희화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틀딱’ ‘꼰대’...비아냥 속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권 ‘곤두박질’>(2018. 10.30.)은 “틀딱, ‘꼰대’, ‘할매미’ 등 노인 비하 단어가 온라인상에 자주 등장하면서 노인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인 인권, 노인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음.

자. 노인 취재 시 보도의 의도와 목적, 보도 방식, 보도 후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CCTV에 담긴 할머니의 악몽>(2021.1.22.)는 80대 노인의 성폭력 피해 상황이 담긴 CCTV를 그대로 방송함.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으나 성추행 행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그런다” 등 가해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음. 설사 성폭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보도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자녀가 설치한 CCTV의 성폭행 영상을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범죄 사건 보도 등에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철서 노인 목 조르며 “쳐봐!”... 가해자는 중1, 처벌 못한다고?> (2021. 1.22.), <영상직접 찍은 동영상에 덜미...폭행 논란 중학생들, 노인학대 죄 적용>(2021.1.27.) 등은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청소년이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한 사건을 전한 인터넷판 보도로서 폭행과 폭언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함. 때문에 가까운 범행의 양상과 심각성을 보도하더라도 굳이 잔혹한 폭행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까지 게재할 필요는 없을 것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



10. 아동·청소년 보도와 인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 실천요강> 등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보도와 인권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아동·청소년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아동과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 <구하라 시리즈-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2021.5.~6.)은 지역에 숨겨진 낙후 주택을 찾아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조명하는 보도였음. 빈곤 아동의 신체 질환은 물론 강박증, 낮은 자아존중감, 어려운 교우 관계 등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가감 없이 전달함. 이 보도는 지역 내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음. 해당 보도 이후 관계 당국이 주거 빈곤 아동 실태조사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해당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 지역신문 컨퍼런스 금상 등을 수상함.



나. 아동과 청소년을 비하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잼민이, 급식충, 등골 브레이커, 초글링, 롬나무, 휴먼급식체 등)과 이들을 차별하는 표현(중2병, 아이, 초딩, 중딩, 고딩)을 자제해야 합니다.

☹️ ○○○ 방송사가 공식 SNS 계정에 영상 홍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잼민짜’라는 단어를 썼다가 사과함.

-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신조어, 특히 특정 행동과 어린이를 합성한 ‘주린이’, ‘요린이’, ‘부린이’, ‘산린이’, ‘토린이’ 등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2022년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사람에 대한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게 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밝힘.

☹ <초딩 요리이들의 즐거운 요리수업>, <요즘 요리이, 고추장 대신 만능 조미료>, <요린이도 백주부로 변신,,, 똑똑한 인덕션 눈에 띄네> 등에서 ‘요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주린이’는 <주린이 가이드>, <주린이의 1타강사 193만명 째한 삼프로TV 인강도 불티>, <주린이 해외투자 시작은 eft-etn으로>, <주린이 캔들차트 잘 보는 방법> 등으로 다수 사용됨. <산린이 인증샷> 열풍에 대박났다. 매출 2배 뚝 인기폭발 제품> 등 산행 초보를 지칭하는 표현도 기능성 등산복 등의 보도에서 자주 사용됨. 골프와 합성한 ‘골린이’, 테니스와 합성한 ‘테린이’, 헬스와 합성한 ‘헬린이’ 등도 대부분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음.

- 민법상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⁵⁾ 따라서 ‘훈육’이나 ‘체벌’ 등의 표현을 지양하고 상황에 맞게 ‘폭력’, ‘학대’라는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12살 아들 체벌한 어머니 입건... 후속 대처 논란>(2022.10.18.) 등 많은 보도에서 ‘체벌’, ‘훈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5) 2021. 1. 26.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던 제915조가 폐지되었음.



다.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해주세요.

☹ <기절놀이 뇌손상>(2019.10.23.)에서 진행자가 사건을 소개하고 피해 학생과 아버지 친구들이 사건 당일에 관해 이야기했음.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뒤에서 목을 조르자 피해 학생이 버둥대다가 기절하여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반복 노출함.

☹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 납치해 트렁크에>(2019.8.16) 등 다수의 보도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 세운 차량의 트렁크를 연 후 달아나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들어 차량의 트렁크에 집어넣는 모습, 이를 말리던 다른 여성을 힘껏 밀어 쓰러뜨리고 전 여자친구를 다시 차량의 트렁크에 집어넣은 후 바닥에 넘어진 여성을 재차 세게 밀어 쓰러뜨린 뒤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노출함.

라.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아동과 청소년의 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촬영하며 또래 폭행 또 있었다 이틀간 맞아>(2019.10.22.)에서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을 다룸. 이때 자료 화면으로 가해 학생이 침대 위에서 피해 학생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해 학생이 서 있는 피해 학생의 몸 위에서 압박한 상태로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 처리하여 노출함.

마. 아동·청소년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분 아니라 부모나 가족, 거주지, 학교 공개 등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보도인 <광주의 분노>(2019.3.12.)에서 법원 인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창문을 통해 “전두환은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함. 사생활 침해 금지 위반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바. 범죄 사건 보도 시 아동, 청소년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아동학대 사건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감 있는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대처방법,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주세요.

☹️ <암수범죄⁶⁾, 아동학대를 부검하다>(2022.2.6.)은 국내 최초로 최근 2년 치 아동 학대 형사 사건 1,406건을 전수 분석해 통계 수치에 가려졌던 아동학대 범죄의 실체를 심층 분석함. 해당 보도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통념을 ‘팩트체크’하고, 아동학대 범죄 종류, 가해 장소, 가해자 특성 등 유형별 분석으로 범행 장소에 따라 학대 피해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과, 판사의 주관에 따라 범죄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끌어냈음. 이 보도는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 등을 수상함.

6) 범죄가 실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다 해도 신원파악 등 해결이 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나. 아동학대 피해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사건명을 피해자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대부분 '정인이 사건'으로 줄여서 불렀음. 이처럼 피해 아동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2021년 1월 9일 ○○○, ○○○○ 등이 강북구 한 편의점에서 내복 차림의 아동이 발견되었다면서 보도했음. 아동학대에 관심이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나, 해당 아동을 '내복 아이', '내복○○'라고 명명했음.
- ☹ 2020년 9월 인천에서 아동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아들을 '라면 형제'라고 명명하는 언론이 많았음.

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학대행위 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라. 가족의 형태(한부모, 양부모, 이혼, 입양 등)와 종교, 국적, 체류자격 등은 아동학대와 직접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보도에서 상세한 정보제공은 특정 가족 형태와 계층,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 ☹ <장기 파열된 3살 베트남 아기. 엄마·동거남이 학대?>(2020.11.12.)에서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와 3살 남자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찾아왔습다.” 등을 언급하고, “함께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동거남도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해 경찰이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국적을 밝히지 않고, 외국인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이 적절했음.

마. 아동학대 보도 시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주세요.

- 아동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 영상, 음향 등을 자극적으로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업수 등의 의무) 제2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혹한에 거리서 발견된 3살 여아,..“도와주세요”>(2021.1.9.)에서 기자가 “한 여성이 어린 아이를 옷으로 감싼 채 들어옵니다. 옷이 흘러내리자 내복만 입은 아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대소변으로 젖은 바지가 부끄러운지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라고 발언하며, 어린이의 영당이를 그대로 보여줌. 이 아동의 인권을 생각했다면 아예 이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음.



-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추측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는 등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인천 화재 아동 사망사고 당시 많은 언론이 '라면 형제 사건'으로 명명하며 이들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났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은 라면이 아니라 불량난이었음.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 당시 '라면'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함. '라면'을 언급한 것은 ○○일보였으나, 이후 모든 언론이 이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받아썼음.

바. 취재 보도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2012년 나주 성폭행 사건 당시, 한 방송사 기자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의 언니를 찾아내서 "마음이 어떠냐.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음. 부모의 동의 없었다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에 해당함.



11. 성소수자 보도와 인권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 소수자 관련 보도와 인권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성소수자 인권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부적절한 표현은 순화어를 사용하길 권합니다.

부적절한 표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권고 표현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성적 지향을 표기하면서 굳이 '연애'를 붙임으로서 성적 지향이 마치 개인적 기호나 즉흥적 선택, 유희에 불과한 것처럼 폄훼함.	동성애 동성애자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이들 표현은 동성애가 마치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에 불과하며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어 부적절함.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으로 표현을 권함.	성적 지향
호모, 게이, 항문성교자, 성중독자	호모 섹슈얼에 대해 비하적으로 표현하거나, 동성 간 성행위를 항문성교로 통칭하고, 동성애를 성에 중독된 사람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부적절	성소수자



<p>(동성애) '조장' '만연', '유행', (동성애) '은밀한', '파문', '논란', (동성애에) '빠져', '즐거'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충격', '경악'</p>	<p>동성애는 조장하거나, 만연하거나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라서 부적절한 표현임. 동성애에 빠졌다, 즐긴다 등의 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채,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부적절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충격, 경악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수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 주의해야 함.</p>	
--	--	--

나. 성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권합니다.

라.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커밍아웃’을, 범죄 사실이나 부정적 행위를 한 것처럼 자백하는 표현으로 혼용하거나, 조롱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커밍아웃: 동성애자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 정체성을 밝히는 의미로서, 범죄 사실 자백 등 부정적이거나 희화화된 의미로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실패도 젊음의 한 부분입니다>(2011. 2.16.)에서 “그동안 대졸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대학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하고 절 퇴학시켰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라고 보도함. 인터뷰이 본인이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적절히 순화하여 보도하기를 권함.

☹ <○○○의 음식잡설①한국 스타 셰프의 허와 실>(2011.3.38.)에서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제는 ‘수석 졸업’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공로게도 에드워드 권의 의혹 이후다. 자, 다음엔 누가 ‘커밍아웃’ 할 것인가”라고 보도함.



마. 사건·사고에 성 소수자가 연관된 경우, 성소수자의 젠더를 부각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보도본부하이라인>(2019.4.10.), <사건반장>(2019.4.10.) 등 다수 방송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 방송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남성인 공범과 연인관계’, ‘자택을 자주 드나드는 영상 확보’, ‘일탈행위’, ‘동성 간 관계가 짐작되는 진술’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고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성적 지향’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 <물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 부끄러운 민낯>(2019.4.10.)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하게 성적 지향을 노출했음. 또한 “○씨의 경우 물몬교 신자로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등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라면서 그의 성적 지향을 ‘부끄러운 민낯’으로 비하함.

바.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댓글 등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 성소수자 이용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특정 연예인에게 입장을 밝히려며 비난이 집중되었음. 이 사실을 전하거나 연예인 ○○가 발표한 입장을 보도하는 다수의 보도(2020.5.11.~12.)에서 “종교 집단 시설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표현하시더니 게이 모임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이 자기 나와바리(구역)이라고 하더니 왜 이번엔 조용하냐”, “가만히라도 있지, 신나게 특정 종교 깔 때부터 알아봤다” 등의 인터넷 상의 댓글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음. 기사 제목과 본문 모두 인터넷 댓글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댓글들을 인용 보도한 것은 부적절함.



12.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와 인권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관련 보도와 인권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 이렇게 해주세요.

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해 보도해주세요.

☺ <전법 사각지대 탈북민>(2022.6.10.)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이 남한에 정착·적응하는 과정에서 불교계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도함. 또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운영 현황을 불교계와 비교 분석했으며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 탈북 과정에서 종교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세히 보도했음. 이 보도는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함.

나.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 공개 시 명확한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 범죄나 사회 부적응 등 일부의 부정적 사례를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북한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다문화 가정 아닌 순수 혈통...> 말 많은 탈북 여성 결혼 전단지>(2014. 8.7.)은 탈북 여성 결혼 전단지의 문제점을 보도했음. 그러나 해당 전단지를 캡처 사진으로 보도했고, 비하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함. 네티즌의 반응이라면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비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음.



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선불리 보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 25일 서거...김여정 계승>(2020.4.26.)은 명백한 오보였음.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 여부는 남북 및 국제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충분한 검증 및 확인 없이 보도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2018.5.19.)는 북한이 2018년 북미회담에 따른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당시, '외신 언론인에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이는 오보로 확인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주의' 조치.

☹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2013.8.29.) <김정은 포르노 추문 옛 애인 현송월 기관총으로 공개처형...국정원 확인>(2013.12.10.) 등은 북한 현송월이 김정은의 애인이며 음란 혐의로 기관총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함. 그러나 2015년 현송월이 모란봉악단장으로 등장, 2018년 1월에는 평창올림픽 참가로 한국 방문까지 하면서 오보로 확인됨.

바.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보도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의 신분을 강조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 ☹ <“손가락 자른다” 협박 여친과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탈북자>(2021. 5.24.)에서는 제목과 내용에서 가해자가 탈북자임을 밝힘. <이별 통보 여친 감금·성폭행 후 생매장.. 20대 탈북민 징역 35년>(2021.8.7.)에서도 피의자가 탈북민이라고 제목에 보도함. 통상적인 경찰 또는 법원발 강력 사건 보도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탈북자’ 또는 ‘탈북민’이라는 특정 신분을 노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할 우려가 있음. 강력범죄는 누구나 저지러 수 있다는 상식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지목함으로써 그 집단이 유독 범죄를 많이 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음.



13. 언론보도 속 인격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에는 언론이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언론인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위의 규정 중 개인의 인격권 침해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주세요.

가.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성관계 좋아하는 멤버?” ○○○, ○○○ 실명 폭로까지>(2021.7.6.)에서 그룹 멤버의 폭로를 빌미로 연예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도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제1항(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음.

☹ <○○인터뷰/○○ 호텔 예약 내역 공개 “○○○과 2년 열애 맞다”>(2018.8.23.)에서 열애설이 돌던 일방 당사자의 폭로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하고, 예약한 호텔명, 투숙 일자를 공개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 재학생 민폐 강남 모녀의 제주도 여행기>(2020.4.2.)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녀온 모녀에 대해 보도했음. 이 보도에서 당사자의 신상정보(이중국적, 현 거주지, 출신 고교, 특이한 경력, 소속 대학 및 학과, 아버지 직업)을 상세히 공개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한 보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 중인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차량 유리에 부착된 아파트 스티커 노출. 여기에 핸드폰 번호, 아파트 동 호수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결정이 내려짐

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한인 여성 프 도착>(2019.5.13.)에서 납치된 후 생환한 우리 국민의 얼굴을 노출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한 보도에서 모 초등학교 입학생 추첨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추첨기를 돌리는 모습을 무단 촬영 및 사용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50만 원) 지급 합의(조정성립)



라. 개인의 질병이나 병명 공개에 주의합니다.

- ☹ <“내 몸도 힘든데 아내·엄마 노릇은 어떻게…병원이 낫죠”>(2017.7.14.)에서 집안일 부담 등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 중인 여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이때 암환자인 신청인의 신상(실명, 나이) 및 암 경력 등을 보도함. 이에 사생활 침해 등이 인정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200만 원) 및 해당 기사의 열람 및 검색 차단 합의가 이루어짐.(조정성립)

마.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타살설로 시끌>(2018.7.23.)은 고인의 시신이 이송되는 상황을 차량으로 추적하며 생중계 보도함. 보도에서 앵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충격일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저게 현장 라이브입니다, 현장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라고 발언해 ‘충격’ ‘라이브’ 등을 반복 강조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의결함.

바.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용어	설명	보도 사례
홍어, 갯상도, 전라디언, 명청도, 핫바지, 보리문둥이, 낙동갈 오리알, 서울깍쟁이, 꽃제비 삼천포로 빠진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왜 찌질거려”..‘홍어○○’ 사과한 ○○, 이번엔 네티즌들과 설전>(2021. 11.5.)에서는 “최근 ‘홍어○○’라는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인 ○○ 교수가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들과 뜨거운 설전”,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한 ‘○○○을 위해 홍어○○ 씹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보도함.

2) 공인의 인격권은 이렇게 보호해주세요.

가. ‘공인’⁷⁾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미제 살인사건을 다루며 희생자 유족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동의한 것보다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한 사례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금(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뤄짐(조정성립)

7) 공인 :사회적 지위나 직무, 재능, 명성, 활동, 의견표명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



☹ 모 지자체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국 꼴찌라는 취지의 기사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아버지와 딸의 사진을 무단 촬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25만 원) 지급 결정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을 경우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인이라 해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 ‘○○○’ 전도 포착>(○○○○뉴스, 2018.6.2.) → 유명 가수이자 연예기획사 대표가 종교집회에서 발언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사례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제2018-639호)

☹ <졸업사진 때문에 묻혔던 ○○○ ‘학폭’ 의혹…다시 수면 위로>(○○○○, 2021.4.13.) → 유명 배우에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학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 과거 학창 시절 사진을 공개함. 공인이라 하더라도 학창 시절 사진은 사생활 영역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함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음.

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OOOO OO♥OO 1년째 목하 열애 중>(2020.12.27.)에서 열애설이 있는 연예인들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음. 이에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사생활 보호)으로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주의' 조치

라. 공인의 초상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2021.6.21.)에서 채팅 앱을 이용, 남성을 유인한 후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에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3인조 범인에 대해 보도함. 그런데 이 보도에서 사용한 삽화에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사용됨. 사회적 파장과 인격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제1항(명예·신용 훼손 금지) 위반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마. 공인의 가족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상습도박 유죄선고 후 딸 쌍둥이와 세부 여행 떠난 ○>(2019.2.25.)는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유명 가수의 근황을 전하는 보도였는데, 딸과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2018.5.30.)에서 유명 래퍼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했는데, 미성년자인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 <○○○ 하차설, 아나운서 부인, 딸 사진? 잠자리, 아내와 불화? 상처를 받아...'울먹'>(2020.2.20.)에서 전 방송사 아나운서에 대한 추문을 보도하며 당사자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함.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

3) 이런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용어	보도 사례
막장 드라마 막장 범죄 막장 국회	'막장'은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갱도의 막다른 곳'이나 '막장에서 광물을 캐는 일'을 뜻함. 그러나 우리는 희망, 엉망, 비논리, 선정적, 무책임 등의 다양한 의미로 '막장'이라는 표현을 앞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기를 권함. * 2009년 3월 3일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막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함.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중독성이 있을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마약 마케팅'이 많음. 그러나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 약물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2022.10.17.)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홍보협력과
전화 (02)2125-9870 FAX (02)2125-0920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화 (02)2278-199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